

CONTACT



변호사 진창수
T: 02.6386.6290
E: changsoo.jin@leeko.com



중대재해 대응센터장
김후곤
T: 02.6386.6230
E: hoogon.kim@leeko.com



변호사 송현석
T: 02.772.4691
E: hyunseok.song@leeko.com



변호사 이화성
T: 02.772.4316
E: hwasung.lee@leeko.com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재해 발생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삼진아웃 등 신설

2026. 10. 1. 다수 · 반복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 운영, ▲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 추가,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및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중지 명령사유 확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확대, ▲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요청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제재수단을 전반적으로 확대 ·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각 조문별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개정 조항별 시행 시기는 부칙 제1조 참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 과징금 부과, 삼진아웃 및 신고포상제 신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61조의2 신설),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59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제158조의2).

■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및 요건 완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의 작업중지'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작업 담당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 등이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2항 신설),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용자뿐 아니라 도급인에게도 직접 작업중지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3항 신설), ▲ **사용자에게는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킬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제4항 신설). 또한 작업중지 등 조치 요구권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5항 신설).

이외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였으며(제52조), 중대재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중상을 입었다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제55조).

■ 건설공사 기간연장사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 확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도급인의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 한파**'를 추가하여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고(제70조 제1항), 도급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의무주체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발주자 외에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은 도급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제5항 신설).

■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변경, 산업안전 관련 제도 평가 · 개선,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시사점: 산업안전 체계의 전반적 재점검 필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 부문에 처음 도입된 과징금 제도는 현재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살펴볼 때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안전을 위한 확실한 인프라 등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존의 산업안전 체계가 사업장이라는 공간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누구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열린 사업장"이라는 개념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작업중지와 관련해서도 실제 작업현장에서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생산 등 기업운영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산업안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는 물론 법률적인 사전적 검토가 필수적이며, 산업안전은 이제 더 이상 독립된 이슈라기 보다는 노사관계 등과 밀접히 연동되어 작동되어야만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번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정비와 구체적인 규정 등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내용 등을 기업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업의 도급구조, 작업중지 절차 매뉴얼 보완 정비, 산업안전 감독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 안전보건과 노동이 함께하는 종합컴플라이언스 구축 등 종합적인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체계적인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경우 본 뉴스레터 담당 변호사들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서초,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